의안번호	제394호
의결연월일	2017. 9. 4.

-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8. 25. 예산군수

❍ 회 부 일 자: 2017. 8. 28. 산업건설위원회

❍ 상 정 일 자: 2017. 9. 4.
제233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산림축산과장 임병호)

가. 제안이유

❍ 기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(제정:2008.02.13.)에 의거 업무 추진 중 **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개정:2016.12.02.)**에 따라 일부 명칭·용어 등 적법하게 조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 개정(안 제명)

-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

※ 도시림 등 :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명칭·용어 개정)

❍ 가로수를 포함하는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
-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

❍ 가로수를 포함하는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개정 (안 제5조)

-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운영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박 상 덕)

❍ 2016년 12월 2일자로 **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**됨에 따라

❍ 「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명을 “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”로 개정하고, 안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용어 및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,

❍ 조례안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

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　　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생　　략

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